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9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 송옥주・이수진・황명선

한정애 • 권칠승 • 전용기

한민수 • 박해철 • 김남희

추미애 • 전종덕 • 정태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, 결산 서,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 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 으로서 보아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,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 직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16호 신 설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호 중 "제11조제1항제16호"를 "제11조제1항제17호"로 한다. 제11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발생 및 조치 현황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8조(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	제8조(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			
치)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	え])			
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				
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				
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				
위원회(이하"운영위원회"라 한				
다)를 둔다.	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	
3. <u>제11조제1항제16호</u> 에 따른	3. <u>제11조제1항제17호</u>			
공공기관의 경영공시				
4. ~ 17. (생 략)	4. ~ 17. (현행과 같음)			
제11조(경영공시) ① 공공기관은	제11조(경영공시) ①			
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				
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				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				
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				
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				
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				
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				
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				
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				
1. ~ 15. (생 략)	1. ~ 15. (현행과 같음)			
<u><신 설></u>	16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족			

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 롱 사건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 롭힘 사건의 발생 및 조치 현 황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u>16.</u> (생략) ② ~ ④ (생략)